공 개

의안번호	제 145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4. 1. (제6차)

의결사항

금융감독원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5. 4. 1.

1. 의결주문

□ 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□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2025 회계연도 결산안을 예·결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승인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회계기간 : 2025. 1. 1. ~ 2025. 12. 31.(제27기)

나. 수지현황

□ 2025년 **총수입은 4,889억원**, **총지출은 4,340억원**으로 **당기 수지차익**(분담금 반환 전 기준)은 **549억원** 발생

○ 당기 수지차익(549억원) 중 **수입초과액**은 **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, 지출불용액**은 분담금 납부기관별 **수납비율**에 따라 **반환 예정**(금융위법 시행령 제12조)

○ 반환 예정금액은 **감독분담금 납부기관 498.9억원**(90.9%), **발행분담금 납부기관 49.9억원**(9.1%)

다. 재무현황

□ 2025년말 기준 **자산은 3,232억원**으로 **전기말(3,152억원)** 대비 **80억원 증가**

○ **수지차익**으로 인한 **예금 증가**(+34억원), 자본예산 집행액 증가 등으로 **유·무형자산 증가**(+80억원) 등이 요인

□ 2025년말 기준 **부채**는 **828억원**으로 전기말(639억원) 대비 **189억원 증가**

○ 자본예산 집행 증가에 따른 **비유동자산준비금 증가**(+111억원), 자본예산 이월액 증가 등에 따른 **미지급금·미지급비용 증가**(+68억원) 등이 요인

□ 2025년말 기준 **자본은 2,404억원**으로 전기말(2,513억원) 대비 **109억원 감소**

○ **전액 수지차익 감소**(전년 대비 △109억원)에 **기인**하며, **수지차익 반환 예정액**을 반영한 자본은 **1,855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**

라. 예산액 대비 수입 및 집행 현황

□ **총수입 4,889억원** : 예산액(4,489억원) 대비 **+8.9% 초과 수입**(+400억원)

○ 주식 발행액 증가 등에 따른 **발행분담금 수입**(+404억원) 등에서 **수입 초과** 발생

□ **총지출 4,340억원** : 예산액(4,489억원) 대비 **96.6% 집행**(△149억원)

○ ①**인건비 불용**(△54억원), ②**퇴직급여 집행액** 감소(△28억원) 등으로 일부 불용하였으나 전기 대비 집행률은 상승(94.1% → 96.6%)

4. 참고사항

가. 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(안) 주요내용 : < 붙임 1 >

나. 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심의 결과 : < 붙임 2 >

다. 금융감독원 결산 관련 법규 : < 붙임 3 >

라. 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(안) : < 별첨 >

(별지)

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(안) 승인

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별첨 **「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(안)」를 승인**한다. 다만, 예·결산심의 소위원회 심의 시 제기된 지적사항(붙임 2)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향후 **예·결산심의 시 금융위원회**에 **그 이행사항을 보고**하도록 한다.

붙임 1 | 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(안) 주요내용

1. 결산 개요

□ **(회계기간) 2025. 1. 1. ~ 2025. 12. 31.**(제27기)

□ **(수지현황) 총수입은 4,889억원, 총지출은 4,340억원, 당기 수지차익은 549억원**(분담금 반환 반영 전 기준)

○ 수지차익이 549억원 발생한 것은 **당초 예상 대비 발행분담금 납부액의 증가*** 등으로 인한 **총수입 증가(+400억원)** 등에 기인

* '25년도 발행분담금 추정액 1,058억원, 발행분담금 징수액 1,462억원

○ **수지차익** 중 **수입초과액**은 **감독분담금 납부기관**에, **지출불용액**은 납부기관별 **수납비율**에 따라 **반환** 예정(감독분담금 499억원, 발행분담금 50억원)

* 근거 :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,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8조

□ **(재무상태)** '25년말 기준 **총자산은 3,232억원, 부채와 자본**은 각각 **828억원** 및 **2,404억원**

<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 현황(요약)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금 액	구 분	금 액
Ⅰ. 총 수 입	**4,889**	**Ⅱ. 총 지 출**	**4,340**
운영수입	4,826	일반관리비	3,976
운영외수입	63	운영외비용 등	364
		Ⅲ. 수지차익	**549**
합 계	**4,889**	**합 계**	**4,889**
Ⅳ. 자 산	**3,232**	**Ⅴ. 부 채**	**828**
유동자산	1,414	유동부채	269
비유동자산	1,818	비유동부채	559
		Ⅵ. 자 본	**2,404**
		기본재산	1,855
		수지차익	549
합 계	**3,232**	**합 계**	**3,232**

2. 수지 현황

□ **(수입)** ’25년 중 **총수입**은 **4,889억원**으로 전기(4,573억원) 대비 **316억원 증가**(+6.9%)하였으며 예산(4,489억원) 대비 **400억 초과**

○ 주식 발행액 증가에 따른 **발행분담금 수입 증가**(+404억원) 등에서 **수입초과** 발생

□ **(지출)** ’25년 중 **총지출**은 **4,340**억원으로 전기(3,915억원) 대비 **425억원 증가**(+10.9%)하였으며 예산(4,489억원) 대비 **149억원 불용**

○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건비 집행액 감소(△54억원), **퇴직급여 집행액** 감소(△28억원) 등이 원인이나 **집행률은 2.5%p 상승**(94.1%→96.6%)

□ **(수지차익)** ‘25년 중 **수지차익은 549억원**으로 전기(658억원) 대비 **109억원 감소**(△16.6%)

* 수지차익 추이(억원) : ‘21년 495 → ‘22년 293 → ‘23년 407 → ‘24년 658 → ‘25년 549

< 부문별 수입·지출현황 >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25년 (A)	2024년 (B)	증 감(A-B)		비고(전년대비 증감 사유)
			금 액	증감률	
Ⅰ. 총 수 입	4,889	4,573	316	6.9	
운 영 수 입	4,826	4,508	318	7.1	
감독분담금	3,308	3,030	278	9.2	감독분담금 예산 증가
발행분담금	1,462	1,422	40	2.8	주식 발행액 증가
한은출연금	50	50	-	-	
기타수입수수료	6	6	0.2	2.4	보험전문인 시험응시수수료(+0.5) 등
운영외수입	63	65	△2	△4.6	수입이자(△4) 등
Ⅱ. 총 지 출	4,340	3,915	425	10.9	
일반관리비	3,976	3,649	327	9.0	
인 건 비	2,633	2,529	104	4.1	임금 인상·인원 증가
경 비	994	942	52	5.5	전산업무비(+14), 세금과공과(+9) 등
퇴직급여	349	178	171	96.1	평균임금 상승 및 근속기간 증가 등
운영외비용 등	364	266	98	36.8	비유동자산준비금전입액(+97) 등
Ⅲ. 수지차익	549	658	△109	△16.6	

3. 재무상황

□ **(자산)** '25년말 기준 **3,232억원**으로 전기말(3,152억원) 대비 **80억원 증가**

○ 수지차익으로 인한 **예금 증가**(+34억원), 자본예산 집행액 증가 등으로 **유·무형자산 증가**(+80억원) 등이 증가 요인

□ **(부채)** '25년말 기준 **828억원**으로 전기말(639억원) 대비 **189억원 증가**

○ 자본예산 집행에 따른 **비유동자산준비금 증가**(+111억원), 자본예산 이월액 증가 등으로 **미지급액 증가**(+68억원) 등이 증가 요인

□ **(자본)** '25년말 기준 **2,404억원**으로 전기말(2,513억원) 대비 **109억원 감소**

○ 전액 수지차익 감소(전기 대비 △109억원)에 기인하며, **수지차익 반환 예정액**을 반영한 **자본**은 **1,855억원**으로 **전년도와 동일**

< 부문별 재무상황 >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25년 (A)	2024년 (B)	증 감(A-B)		비 고
			금 액	증감률	
Ⅰ. 자산총계	**3,232**	**3,152**	**80**	**2.5**	
유 동 자 산	1,414	1,380	34	2.5	
예 금	1,408	1,374	34	2.5	수지차익 등에 따른 예금 증가
기 타	6	6	0.01	0.2	선급비용(+0.2), 미수수익(△0.1) 등
비유동자산	1,818	1,772	46	2.6	
투자자산	487	521	△34	△6.5	퇴직연금운용자산(△29) 등
유형자산	1,071	1,033	38	3.7	공구기구집기(+47), 구입중인자산(+24) 등
무형자산	260	218	42	19.3	구입중인자산(+48) 등
Ⅱ. 부채총계	**828**	**639**	**189**	**29.6**	
유 동 부 채	269	201	68	33.8	
미지급금	118	71	47	66.2	자본예산 이월 미지급금(+72) 등
예 수 금	99	100	△1	△1.0	근로소득 원천징수(△3) 등
기 타	52	30	22	73.3	미지급비용(+21), 선수수익(△1) 등
비유동부채	559	438	121	27.7	
퇴직급여충당부채	-	-	-	-	퇴직연금운용자산 등 포함
비유동자산준비금	50	40	10	25.0	퇴직연금사외적립충당부채 전입
퇴직연금사외적립충당부채	509	398	111	27.9	자본예산 집행
기 타	0.4	0.4	0.01	1.6	
Ⅲ. 자본총계	**2,404**	**2,513**	**△109**	**△4.3**	
기 본 재 산	1,855	1,855	-	-	통합시 인수재산 및 한은 출연금
수 지 차 익	549	658	△109	△16.6	

4. 예산액 대비 수입 및 집행현황

□ **(수입) 4,889억원,** 예산(4,489억원) 대비 **400억원 초과**(+8.9%)

○ 주식 발행액 증가에 따른 **발행분담금 수입**(+400억원) 등에서 **수입초과** 발생

< 예산수입 현황 >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25년 예산		2025년 수입		차 이 (B-A)	수입률	
	(A)	구성비	(B)	구성비		(B/A)	2024년
감독분담금	3,309	73.7	3,308	67.7	△1	99.9	100.0
발행분담금	1,058	23.6	1,462	29.9	404	138.2	140.5
한은출연금	50	1.1	50	1.0	-	100.0	100,0
운영외수입 등	72	1.6	69	1.4	△3	95.0	106.0
합 계	**4,489**	**100.0**	**4,889**	**100.0**	**400**	**108.9**	**110.0**

□ **(집행) 4,340억원,** 예산(4,489억) 대비 **149억원 불용**(96.6% 집행)

○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건비 집행액 감소(△54억원), **퇴직급여 집행액** 감소(△28억원) 등이 원인이나 **집행률은 2.5%p 상승** (94.1%→96.6%)

< 예산집행 현황 >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25년 예산		2025년 집행		차 이 (B-A)	집행률	
	(A)	구성비	(B)	구성비		(B/A)	2024년
일반관리비	4,057	90.4	3,976	91.6	△81	98.0	94.6
총인건비	2,687	59.9	2,633	60.7	△54	98.0	98.9
경 비	993	22.1	994	22.9	1	100.1	99.5
퇴직급여	377	8.4	349	8.0	△28	92.5	50.3
자 본 예 산	245	5.4	235	5.4	△10	96.1	97.9
운영외비용 등	187	4.2	129	3.0	△58	68.8	79.4
합 계	4,489	100.0	4,340	100.0	△149	96.6	94.1

5. 기타 사항

□ 예산 초과계리 : 52.8억원

○ **세금과공과**(+48억원), **등기소송비**(+0.5), **운영외비용**(+3.0억원), **법인세비용**(+1.3억원) 등의 비목에서 예산 대비 **52.8억원**을 초과 집행*

* 금감원장은 퇴직급여, 세금과공과, 등기소송비, 보험료, 운영외비용, 법인세비용 비목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(예산총칙 제8조)

< 초과계리 관련 비목 예산(단위 : 억원) >

과 목	'25년 예산 (A)	'25년 집행 (B)	차 이 (B-A)	비 고
세금과공과	252.2	300.2	48.0	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집행액 증가
등기소송비	10.6	11.1	0.5	소송 위임 건수 증가로 집행비용 증가
운영외비용	-	3.0	3.0	
대손상각비	-	0.001	0.001	회수가능성 낮은 미수수익(대부업 검사수수료)에 대한 대손 설정
기타운영외비용	-	3.0	3.0	해외사무소 전도금 외환차손 및 외화평가손실 등
법인세비용	4.4	5.7	1.3	이자수익 관련 법인세비용 증가
합 계	267.2	320.0	52.8	

□ 예비비 : 172억원 중 115억원 사용

○ **평가상여금**(80억원), **인력증원** 관련 **인건비**(34억원), 개발비(1억원) 및 공구기구집기(0.1억원) 등 **자본예산**에 **사용**

< 예비비 사용 내역(단위 : 억원) >

구 분	사용 전 예산액(A)	사용액(B)	사용 후 예산액(A-B)
예비비	172	115	57
목적예비비	165	114	51
일반예비비	7	1	6

< 예비비 배정 관련 비목 예산(단위 : 억원) >

구 분	배정 전 예산액(A)	예비비 배정액(B)	배정 후 예산액(A+B)
총인건비	2,512	114	2,626
인건비	2,437	113	2,550
복리비	75	1	76
자본예산	170	1	171
개발비	50	1	51
공구기구집기	120	0.1	120
합 계	2,682	115	2,797

붙임 2 | 2025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소위 심의결과

1. 심의 경과

□ 금융감독원 202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**'26.3월** 중 **「금융감독원 예·결산심의 소위원회*」** 개최

* 「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」 §18, 「금융위원회운영규칙」§14 등에 따라 설치·운영 중

2.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

1 DART

○ 금번 결산시 보고된 **'DART 사용자 친화성 제고방안'**中 **'공시 제출인'** 관련 방안 부족

◈ **(부대의견) 공시제출인 대상 방안을 보완**하여 **"DART 사용자 친화성 제고방안" 추진현황 및 실적**을 **'27년 예산소위**에 보고

2 정보화사업

○ 중장기 사업인 **'디지털 전환 업무혁신'**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 조직(PMO)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성과지표 설정, 추진 방향 등 **사업관리 관련 적극적인 참여 필요**

◈ **(부대의견) 프로젝트 관리 조직(PMO)**이 **참석**하여 그간 **디지털 전환 업무혁신 사업 추진 경과** 및 안정적 사업 관리 위한 **향후 계획**을 **'27년 예산소위**에 **보고**

3 금융회사 검사

○ 시장안정성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사고 발생을 고려, **검사 업무 전반 개선** 및 **내실있는 성과 도출 필요**

◈ **(부대의견)**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**검사업무 개선방안**을 **'26년 결산소위**에 보고

4 금융교육

○ **사업**의 **효과적 집행**을 위해 집행률* 제고 방안 모색 필요

*'24년 90.2% → '25년 86.9%, 예산 13.8억원 대비 12.0억원 집행

◈ **(부대의견)** 금융교육의 **사업 집행률 제고 방안***을 **'27년 예산소위**에 보고

* 집행률 하위 2개 사업은 별도 제고방안 첨부

○ **'금융과 경제생활'** 교과목이 **교육 현장**에서 **활성화**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
◈ **(부대의견) '금융과 경제생활'** 교과목 **홍보강화 및 교육 지원 방안**을 **'27년 예산소위**에 보고

5 국제회의·협력

○ 국제업무 수행시 **업무계획 수립·집행** 등을 **금융위와**의 **긴밀한 조율** 하에 **추진**할 **필요**

◈ **(부대의견) 국제업무별 업무계획** 수립 단계부터 **금융위원회**와 **공유·협의**하고, **그 결과**를 **'26년 결산소위**에 보고

6 해외사무소

○ **국내 금융회사**의 현지 인허가·제재 등 현안 중심 활동 뿐만 아니라 **금융당국**간 **국제업무 협력**도 **적극 추진 필요**

◈ **(부대의견) 현지 금융당국과의 국제업무 협력 강화 방안**을 마련하고, **'26년 결산소위**에 보고

붙임 3 금융감독원 결산 관련 법령

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

제18조(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·감독)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·운영·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2.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

제45조(예산과 결산)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(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2조(분담금)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(이하 이 항에서 "총분담금액"이라 한다)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. 다만,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,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할 때 고려해야 한다.

1. 총분담금액에 제3항제2호·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

2.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
(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 -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) × [(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- 제1호의 금액) ÷ (총분담금액 - 제1호의 금액)]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88조(분담금의 분담요율·한도 등) ②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혁신기획재정담당관
연 락 처	02-2100-2782